2023년『중소기업협동조합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사업 모집 공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업 촉진 및 공동사업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사업의 참여조합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4일

중소기업중앙회장

1. 사업목적

❑ 협동조합의 시험인증・생산・판매 등 비즈니스 가치사슬 전반의 디지털화, 경영효율화, 환경규제 대응 지원을 통한 협업모델 구축 및 혁신형 공동사업 활성화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3년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사업

❑ **사업기간** : 협약일 ~ 2023.12.

❑ **지원내용** : 협동조합이 추진하는 혁신형 공동사업에 대한 **직접사업비 지원***

* 사업기간 내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이 가능한 직접사업비 지원에 한함

❑ **지원규모** : 조합 당 최대 1억원 (전체 사업비의 총 80%)

【사업비 예시(최대)】

전체 사업비(1.25억원)	
사업비 중 보조금(1억)	참여조합 자부담(25백만원)

※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조합 부담)

❑ **지원유형**

구 분	과 제 명
자유공모	·시험·인증, 디지털 전환, 환경규제 대응, 공동마케팅, 물류혁신, 특화인력양성 등

❑ 지원자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 지원제외 대상

·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조합원의 소상공인 비중이 50% 이상인 조합**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주관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사업을 수행했거나 수행중인 조합**
· 최근 2년 연속 총회 미개최 조합
· 휴면·권리제한·해산 건의 중인 조합, 이사장(회장)과 상근이사가 모두 공석인 조합
· 최근 3년 이내 해당 지자체를 통해 동일목적 지원사업을 수행했거나, 수행중인 조합
*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선정이후에도 취소 가능하며, 사업 취소시에 사업비는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비 사용불가 항목

○ 조합의 인건비, 퇴직적립금, 근로자 복지비용
○ 수익모델 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시스템 구축비용
○ 모든 차량(업무용/작업용 차량, 오토바이 등 포함) 구매비용
○ 사무용품, 냉난방기 등 편의시설, 범용장비(노트북, 컴퓨터 등) 구매비용
○ 자본재(장비/시설/설비 등) 임대비용
○ 답례품성격의 물품 (예) 티슈, 화장지, 생수, 아이스팩 등
○ 사무용품,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 운영비
○ 인사・노무・회계컨설팅 비용
○ 회계감사 비용, 소송대리 비용
○ 보험료, 기부금, 자금조달비용(대출이자), 각종 세금(부가세 등)
○ 기타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비용

❑ 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평가결과 70점 이상과제 중 종합평점에 따라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1)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협업모델 구축 및 혁신형 공동사업 활성화의 사업 취지를 고려해 신청대상의 정량적 평가(규모, 사업수익, 조합원 수 등)를 제외하고 사업계획서의 구체성,가능성,효과성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2) 동일한 점수인 경우 신규설립조합, 영세조합(사업수익 3억원 미만) 우선 지원

○ 평가방법 : 자격요건평가(적/부) + 사업계획평가(100점)

구 분		평 가 방 법
자격요건평가	적/부 평가	주관부서에서 사전평가 (사업신청 자격 적정성 검토)
사업계획평가	정량/정성 평가	심사위원회 평가 (사업 신청조합 사업제안서 발표)

○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 가 항 목	배 점	
총 계		100	
정량 평가 (20)	1. 총회 개최여부(최근 2년)	정상 개최	5
		1회 미개최	0
	2. 이사장, 상근이사 공석여부(신청일 기준)	공석 없음	5
		1인 공석	0
	3. 법정 최저 발기인수 대비 조합원수 -(조합원수) : 사업신청일 기준 현재 -(법정 최저 발기인수) : 설립당시 기준	100%이상	10
		50%이상~100%미만	5
		50%미만	0
정성 평가 (80)	1. 사업목표수립의 적정성 및 혁신성 (사업목표의 필요성 및 창의성)	20	
	2.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사업수행체계 및 방법의 효과성)	20	
	3. 사업비 산출근거의 타당성 (예산 편성 및 집행계획의 합리성)	10	
	4. 기대효과 및 향후 사업확대방안 (조합활성화 등 기대효과, 지원종료 후 투자 및 확대방안) * 고용,매출액,조합원 수 등 정량적 수치 제시 필수	20	
	5. 사회경제적가치 창출여부 (조합원 매출 증대/조합원 복지/지역사회 환원/환경 개선 등)	10	

❑ **우대 대상** : 공고일 이전, 본회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도출된 사업계획을 이행하는 경우 가점부여(3점)

○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도출된 사업계획의 이행 및 확대

○ 공동사업SOS지원단 컨설팅을 통해 도출된 사업계획*의 이행 및 확대

3. 사업 추진절차

❑ 선정절차

공고 및 신청·접수		1차 평가		2차 평가 및 심의		사업협약
사업신청서 접수 (E-Mail)	▶	신청자격 적정성 평가	▶	사업제안서 발표* 및 심의위원회 평가·선정	▶	협약체결**
협동조합		중앙회		심의위원회		협동조합↔중앙회

* 발표자는 협동조합 임직원(비상근 포함)에 한함

** 협약 과정에서 사업비소요내역서 증빙자료 허위 제출 등 부적정사유 발생 시 사업선정 취소

❑ 보조금 지급 및 정산절차

❍ 지급절차

사업협약	⇨	자부담금 입금 및 사업수행	⇨	(필요시) 선급금 신청 및 지급
협동조합↔중앙회		협동조합		협동조합↔중앙회

⇨

사업 완료 및 결과보고 제출	⇨	결과보고 평가 및 보조금 지급 결정·통보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협동조합→중앙회		중앙회→협동조합		중앙회

❍ 자부담금 입금

- 사업수행 조합은 사업비전용통장을 개설해야하며, 사업 협약 이후 1개월 이내 자부담금 입금 후 이체확인증을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선급금 지원 신청 및 지급 결정

- 사업수행 조합이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선급금(지원금의 최대 50%)이 필요한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함

❍ 사업실행계획에 따른 사업비 집행

- 사업선정 후 최종 확정된 사업실행계획서상의 집행계획에 따라 사업비 집행
- 사정변경에 따라 당초의 사업목적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① 사업을 변경하거나(세부사업 신설 및 삭제 등) ② 보조금 총액의 변경인 경우 공문으로 승인요청 필수

  * 자부담 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 지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

- 사업비 정산 시 의무적 자부담(사업비의 20%)을 집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무적 자부담액과 실제 집행한 자부담의 차액을 반납해야함

○ 보조금 정산 및 지급 방법

- 운영기관은 지원조합의 사업수행결과보고서 평가 후 결과 및 보조금 교부 결정에 대해 지원조합에 통지함
- 운영기관은 보조금 지급 검토 시 지원대상의 사업비 지출내역을 포함한 사업결과보고서 일부를 보완 요구할 수 있음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3.3.27(월) ~ 4.14(금)까지 신청 마감

❑ **제출서류(붙임 서식 참고)**

① 사업신청서(PDF, Hwp) 각 1부

② 사업계획서(PDF, Hwp) 각 1부

③ 사업계획서 요약자료(PDF, Hwp) 각 1부

④ 사업비소요내역서(PDF) 1부

⑤ 사업참여확약서(PDF) 1부

⑥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PDF) 1부

⑦ 조합원명부(엑셀자료)

⑧ **조합원 명부 기준 절반 이상 조합원의 중소기업확인서**(PDF)

❑ **제출방법 : E-Mail 제출**

- 접수처(중앙회) : **협업사업실 업무담당자 이메일**
  (swham@kbiz.or.kr 또는 hy6114@kbiz.or.kr)

※ **참고사항**

- 사업신청서는 일정배수 이상 접수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 신청서 제출 조합에 대해 사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음

5. 기타 사항

❑ **설비(시설,장비) 지원조합의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함**
- 협약기간 동안 설비 관련 사항에 대한 본회의 조사 업무 등 에 협조해야 함

❑ 본 사업 공급(위탁,용역)기업 선정의 책임은 지원조합에 있음
- 본 사업은 지원조합이 공급기업을 자율적으로 매칭하여 사업에 참여해야 하며, 사업협약 이전에 공급기업 매칭을 완료해야 함

❑ 지원조합으로 최종선정 후 신청 취소 시 향후 본 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음

❑ 사업비 적정성 평가를 통해 조합의 최종사업비를 일부 조정할 수 있음

❑ 필요시 조합이 제출한 사업비소요내역서에 대한 원가계산용역, 회계정산용역이 발생할 수 있으며 비용은 조합부담금으로 함

❑ 본 사업은 사업환경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중소기업협동조합 혁신형 지원사업」업무지침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6.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협업사업실
- 함시우 부부장 (전화번호)02-2124-3223, (이메일)swham@kbiz.or.kr
- 이혜영 주 임 (전화번호)02-2124-3221, (이메일)hy6114@kbiz.or.kr

붙임 1 **사업신청서 서식**

「중소기업협동조합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사업」 신청서

일반현황	조 합 명		이사장(회장)명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 (F A X :)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수익(연) *'22년 기준	
	조합원수 *신청일 기준		사업담당자명	(연락처 :) (e-mail :)

사업내역	사업명		
	재 원 별 (VAT제외)	총 사업비	금000000원
		정부보조금	금000000원
		조합부담금	금000000원

참여자격확인사항	**◎ 아래에 해당하는 조합은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칸에 v 표시**	
	조합원의 소상공인 비중이 50% 이상을 초과하는 조합	☐ **확인**
	최근 3년 이내 중앙부처 또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동일목적 지원사업을 수행했거나 수행 중인 조합	☐ **확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주관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사업을 수행했거나 수행 중인 조합	☐ **확인**
	국세 및 지방세 미납 사실이 있는 조합	☐ **확인**

위와 같이 중소기업협동조합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3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중소기업중앙회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계획서 요약본 1부. 3. 사업비소요내역서 1부. 4.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사업 참여확약서 1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5. 조합원 명부 1부. 6. 조합원 명부 기준 절반 이상 조합원의 중소기업확인서 1부 끝.

붙임 2 사업계획서 서식

2023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혁신형 공동사업
사업계획서

사 업 명	
사 업 비	
사 업 기 간	

2023년 월 일

00000협동조합(연합회)

< 목 차 >

1. 사업개요

1) 사업주제 및 사업모델 (도식화)

2) 추진배경 및 목적

3) 사업 추진의 필요성

2. 추진사업의 목표 및 내용

1) 사업 수행목표 및 도달수준

(공동사업의 구체적인 수익창출 방법 기술, 수익의 원천 및 진행방법을 작성합니다.)

2) 세부추진내용 및 방법

3) 수행일정 및 주요 결과물

4) 사업예산 편성 및 집행계획

(추진 과정 중 외부용역/장비구매/설치/구축비 등 소요 시 반드시 작성합니다.)

3. 사업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1) 사업의 추진전략·방법

(추진 과정 중 외부기관과 협업, 용역, 공동 추진 시 해당 내용을 반드시 작성합니다.)

2) 사업의 추진체계

4. 기대효과 및 향후 사업확대방안

1) 추진사업의 기대효과

(고용,매출액,조합원 수 등 정량적 수치를 반드시 작성합니다.)

2) 추진사업의 활용방안

(지원종료 후 향후 최소 3년 간 투자 및 확대방안을 제시합니다.)

5. 사회경제적가치 창출효과

<작성요령>

(본 안내사항 부분은 제출시 삭제해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의 서식은 각 항목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항목을 추가하거나 항목의 순서와 구성을 변경하는 등 서식을 수정하여 사용하거나 별도의 첨부자료 활용이 가능합니다.

· 계획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계획서 별첨으로 제출해야합니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모호한 표현(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필요시 한문과 영문을 병기할 수 있으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1. 사업개요

1) 사업 주제 및 사업모델(도식화)

2) 추진배경 및 목적

3) 사업 추진의 필요성

2. 추진사업의 목표 및 내용

1) 사업 수행목표 및 도달수준

2) 세부추진내용 및 방법

3) 수행일정 및 주요 결과물

4) 사업예산 편성 및 집행계획

3. 사업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1) 사업의 추진전략·방법

2) 사업의 추진체계

4. 기대효과 및 향후 사업확대방안

1) 추진사업의 기대효과 * 협동조합 공동사업 성과 목표 (필수작성)

구분	조합원	고용인원	사업수익
’ 23년	명	명	백만원
’ 24년	명	명	백만원
’ 25년	명	명	백만원
* 신청연도 기준 3년 간 협동조합 성과 목표			

2) 추진사업의 활용방안

5. 사회경제적가치 창출효과

붙임 3 **사업계획서 요약자료 서식**

사업계획서 요약자료

<작성요령>

(본 안내사항 부분은 제출시 삭제해야 합니다)

- 2p 이내 작성
- 불필요한 수식 등을 최대한 생략하고 간결하여야 함
- 지정된 작성 순서 및 기준 준수
- 전체 사업계획서 일부를 편집하여 작성하는 것을 지양

1. 사업의 개요

1) 사업주제 및 사업모델

2) 추진의 배경 및 필요성

2. 추진사업의 목표 및 내용

1) 사업 수행목표 및 도달수준

2) 세부추진내용 및 방법 (수익창출 방안)

3. 사업추진전략 · 방법 및 추진체계

1) 사업의 추진전략 · 방법

2) 사업의 추진체계

4. 기대효과 및 향후 사업확대방안

1) 추진사업의 기대효과

2) 추진사업의 활용방안

붙임 4 사업비소요내역서 서식

사업비소요내역서

협동조합명 (연합회명)		이사장명 (대표자명)	(인)

□ 세부내역

비목	세목	세부내역	금액(원)	비고
직접비	①	※ 세부 규격, 단가 x 수량 x 횟수 등		
	②	※ 세부 규격, 단가 x 수량 x 횟수 등		
	③	※ 세부 규격, 단가 x 수량 x 횟수 등		
	④	※ 세부 규격, 단가 x 수량 x 횟수 등		
	⑤	※ 세부 규격, 단가 x 수량 x 횟수 등		
총 계				

※ 사업공고문 내 사업비 지원불가항목은 기재 불가합니다.
※ 서류 제출시 공급(용역)업체 사업자등록증, 제안서, 견적서 2개 이상을 필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금액은 자부담금을 포함한 총 지원금액이며, 부가세(VAT)는 제외하여 작성합니다.
※ 부가세(VAT)는 협동조합 부담입니다.

붙임 5 **사업 참여확약서 서식**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사업 참여확약서

▣ 조 합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이 사 장 명 :

본 협동조합(연합회)은 2023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사업에 신청함에 있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일체의 허위사실이 없을 것을 확약하며, 아래의 보조금 승인 조건에 위배될 경우에는 선정취소 또는 협약해지(지원금 환수) 등 처분에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가. 보조금 교부 조건에 위배하였을 경우
나.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다. 그 밖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운영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조사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2023 . . .

0000협동조합 (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귀하

붙임 6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2023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사업」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내역 [필수]**

수집 개인정보 항목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생년월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제공하신 정보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사업] 운영 및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합니다. ① 본인확인 및 식별 절차에 이용 : 성명,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② 의사소통, 정보 전달, 사후관리 등 이용 :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본 동의서 제출시점부터 3년 또는 삭제 신청 시 까지

* 귀하께서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당 기관의 「중소기업협동조합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사업」 신청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의 ☐ 비동의 ☐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내역 [필수]**

제공받는 자	중소기업중앙회, 정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국회
목적	「중소기업협동조합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사업」 운영, 정보전달용
정보항목	개인 식별정보(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보유 및 이용기간	본 동의서 제출시점부터 3년 또는 삭제 신청 시 까지

* 귀하께서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당 기관의 「중소기업협동조합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사업」 신청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의 ☐ 비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

2023년 월 일

조합명 : 이사장 : (서명)

중소기업중앙회장 귀하